

※관세법 교재 157페이지 용도세율부분 오류수정 사항

교재를 아래와 같이 수정합니다.

세율이 낮은 용도에 사용하여 해당 물품에 그 낮은 세율(이하 “용도세율”이라 한다)의 적용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 다만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세관장으로부터 해당 용도로만 사용할 것을 승인받은 경우에는 신청을 생략할 수 있다.

〈개정 2021. 12. 21.〉

- ① 별표 관세율표 상의 기본세율, 잠정세율
- ② 긴급관세, 특정국물품 긴급관세, 농림축산물 특별긴급관세
- ③ 조정관세, 할당관세, 가산관세
- ④ 국제협력관세, 일반특혜관세

※ 단량관세, 상계관세, 보복관세, 편익관세는 그 대상이 아니다.

3. 용도세율 적용신청 및 승인

법 제83조제1항에 따라 용도세율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해당 물품을 수입신고하는 때부터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까지 그 품명·규격·수량·가격·용도·사용방법 및 사용장소를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 다만, 해당 물품을 보세구역에서 반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5일이 되는 날까지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. 〈개정 2022. 2. 15.〉(영 제97조)³⁸⁾

참고

〈용도세율 적용제외(관세법 기본통칙 제83-0-1조)〉

물품의 성상이 그 용도 이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또는 법 별표 관세율표상 “주로 -에 사용되는 것”으로 표시된 물품은 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.

위내용에서 상단 [별표 관세율표나 제50조제4항, 제51조, 제57조, 제63조, 제65조, 제67조의 2, 제68조, 제70조부터 제74조까지 및 제76조에 따른 대통령령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용도에 따라 세율을 다르게 정하는 물품을 세율이 낮은 용도에 사용하여 해당 물품에 그 낮은 세율(이하 “용도세율”이라 한다)의 적용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 다만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세관장으로부터 해당 용도로만 사용할 것을 승인받은 경우에는 신청을 생략할 수 있다. 〈개정 2023. 12. 31.〉] 개정일자를 수정하고,

상단의 표와 아래 텍스트인 덤핑, 상계, 보복, 편익은 대상이 아니라는 문구를 삭제 부탁드립니다. 금번개정으로 포함됩니다.

그리고 아래 적용신청 및 승인의 일자를 [개정 2024년 2월 29일]로 변경 바라며,

[법 제8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세관장으로부터 해당 용도로만 사용할 것을 승인받으려는 자는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신청서에 해당 물품의 품명, 규격 및 용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신청해야 한다. 〈신설 2024. 2. 29.〉] ◀ 추가부탁드립니다.